

#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안내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8조의2(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,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(구청장)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해제신청제 신청 안내

- 신청대상자 :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\*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\*\*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
  - \* 해제 입안신청 전,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
  - \*\*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
- 해제입안 결정통지 :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문의 : 남구청 건설과 도시계획팀(☎051-607-4731/4734)